

「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정

□ 제정이유

-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(‘24.5.17.)에 맞추어 국가유산 수리에 우수한 품질의 전통재료 도입이 활성화 되도록 전통재료에 대한 인증 절차,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마련

□ 주요내용

- (규 칙 명) 「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
- (대상재료) 천연 및 인공무기안료, 아교, 기와 및 전벽돌(안 제2조)
- (심사·평가) 서류심사, 현장심사, 품질시험(안 제8조~제10조)

구 분	세 부 내 용
서류심사	· 전통재료 생산방법이 기술된 매뉴얼, 시설 및 장비, 인력 수 등을 서면으로 평가
현장심사	· 제출 서류와 생산 현장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작업자 면담 실시
품질시험	· 현장심사 시 확보한 재료를 시험기관에 품질시험 의뢰

- (인증기관)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(안 제3조)
- (시험기관)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인기관
*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, 같은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사업자 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도 가능
- (이의신청) 심의 결과에 불복 시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기
- (재심사) 인증기관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심사 결과를 통보
- (인증표시) 전통재료의 표면에 서식에 따른 인증재료 표시

□ 추진경과

- 부처협의, 행정예고, 부패영향평가: '24.2월 ~ 5월
- 규제심사: '24.6.1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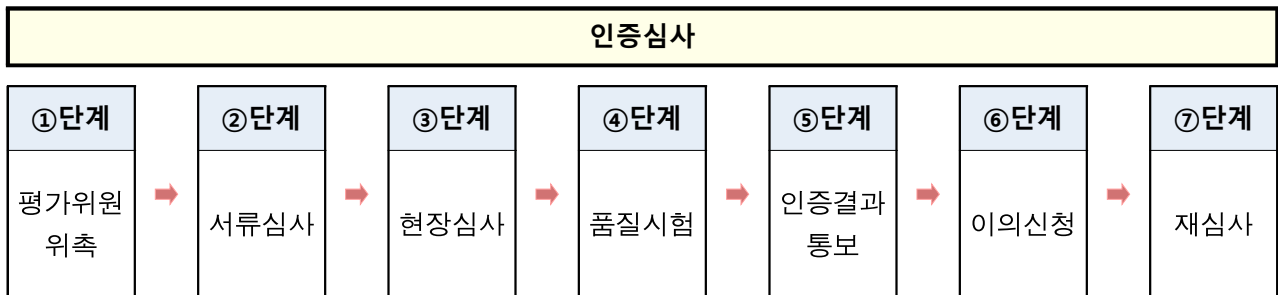
□ 향후일정

- '24.7.1. 시행에 따라 인증제 운영

□ 신청 및 접수 단계

- 인증기관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통재료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 접수

□ 심사 단계



- ①단계 : 접수기간 내 접수된 재료의 종류에 따라 평가위원 위촉(재료별 3명 이내의 전문가)
- ②단계 : 생산 매뉴얼, 시설 및 장비 현황, 고용 인력 수, 직원 교육 실적, 품질관리 방법
- ③단계 : 인증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현장 작업이 일치하는 지 여부, 작업자들의 생산 방법 이해도 확인
- ④단계 : 공인기관, 적합성평가사업자 또는 문화유산연구원에 품질시험 의뢰
- ⑤단계 : ②~④단계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7일 이내 통보 및 공지
- ⑥단계 : 인증결과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인증기관으로 제출
- ⑦단계 :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회신